



LPG충전·판매·집단공급업자 대상 품질검사 실시

석유품질검사소·안전공사, 충전소 933곳 2,053회 검사

석유품질검사소 서울·경기·강원·영남지역 안전공사 인천·충청·호남·제주지역

충전업소당 최소 연 2회 불시검사...추가 검사

LPG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품질검사가 실시된다.

산자부는 최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LPG충전·판매·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2천2백 53회에 걸쳐 LPG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LPG충전사업자 933개소 2,053회 ▲LPG판매사업자 4,500개소 150회 ▲LPG집단공급사업자 1,500개소

50회 등이다.

산자부는 특히 충전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최소 연 2회의 불시검사 및 필요시 추가 불시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기관별로는 석유품질검사소가 서울·경기·강원·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8개 시·도 LPG사업자를 대상으로 1천3백52회를 검사한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인천·대전·충남·충북·광주·전

남·전북·제주 등 8개시·도 LPG사업자를 대상으로 9백1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탁검사기관간 검사업무는 경쟁을 통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광역지자체 및 LPG충전소수를 감안, 시도별로 배분됐다.

한편 LPG품질검사는 LPG에 이물질 혼입 또는 프로판-부탄의 혼합률 부적정으로 가스사용 기기 기능장애 및 가스사고 유발 우려가 제기돼 왔고, 부탄에 대한 특소세의 대폭 인상에 따라 지난 해 LPG법에 신설된 바 있다.

충전소에서 상호표시 안된 용기

충전시 행정처분 대상

협회 건의에 산자부회신

앞으로 LPG충전소가 상호표시가 안된 용기에 충전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LPG충전사업자는 용기에 LPG를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LPG법시행규칙 제20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별표12의 규정에 따라 용기의 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용기상호표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충전할 경우 등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협의로 회신해왔다. 우리회는 최근 충전소와 판매소간 용기 유통 시에는 상호표시여부를 문제삼지 말고 충전소 단속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규개위, LPG공급구역제한 기한 연장 불가”

사업자간 가격담합·안전점검 소홀·설비가격 인상 등 부작용 많아

7.24 규개위 심사결과 공급자가 소비시설 전액부담시 계약기간 명시 필요

7.31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LPG공급구역 제한(일명 구역판매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판매업계의 건의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에서 반대에 부딪혀 끝내 좌절됐다. 산자부에서 제출한 연장필요성에 대해 규개위가 심사한 내용을 게재한다.

▲주택용 가스시설을 체적거래로 개선 및 판매사업자의 의식개혁 기반 조성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규개위는 7.4현재 업무용 100%, 주택용 91%의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당초 의도한 규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여지며 이와같은 계약체결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개선현황이 체적시설의 경우 업무용 88.5%, 주택용 12.5%, 휴즈콕설치 주택용 39.9%로 계약체결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가스공급자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아울러 현행 법령상 주택용가스의 공급자

시설은 중량거래의 경우 가스용기에 한정되고, 체적거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을 모두 체적거래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8개월 동안 공급구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급구역제한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뜨네기·원정판매의 성행과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져 안전공급계약제도 자체가 무산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규개위는 뜨네기·원정판매는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시행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만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이미 보완되어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시행이전과 달리 사실상 무허가판매사업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공급구역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할지라도 무허가판매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무허가판매사업자에 대한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집중단속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필요시 행정처분기준 세분화 및 강화) 및 관련규정에 대한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LP가스판매업자의 대다수가 공급구역제한기간의 연장에 찬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일부제한 하여도 가스가격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공급구역제한의 규제대상은 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되는 사항인 바, 안전공급계약의 체결이 정착된 상태에서 공급구역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허가권역내의 판매사업자들이 담합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LPG가격 및 소비자 가스설비비용 과다인상·안전점검부실 등)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되어 결과적으로 기존 LP가스판매업자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시장경쟁원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는 등 독과점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하다는게 규개위의 입장이다.

LPG충전소-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기준

신규허가 및 사업소이전 변경허가시에만 적용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폐지…산자부장관이 정하는 때 실시

산자부, LPG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LPG충전소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유지해야 할 안전거리기준은 신규허가 및 사업소이전으로 인한 변경허가시에만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LPG법시행규칙개정안」을 7.9자로 입법예고하고,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 또는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 LPG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

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LPG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LPG특정사용자의 대상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유흥주점과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추가됐다.

또한 가스공급자는 사용자를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사용자시설에 상호, 동·호수를 표시해야 하며, 안전사용 및 점검요령 등이 기재된 안전수칙을 제작하여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LPG자동차를 사용

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족이 당해 LPG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현행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폐지하여 가스안전 관리 환경이 변경되어 가스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때에만 실시하는 전문교육으로 변경하고, LPG사용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스배달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산자부는 7월31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상반기 석화사 LPG판매량 큰 폭 증가

17만6천여톤 판매…전년동기대비 57.2% 늘어

부탄 74.3% · 프로판 20.4% 각각 증가

석유화학사들의 국내 LPG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동안 석화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LPG는 17만6천2백18톤으

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2천1백15톤보다 57.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탄은 13만3천2백74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4.3%가, 프

로판은 4만2천9백44톤으로 20.4%가 각각 증가했다.

석화사별로는 삼성종합화학이 5만6천93톤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여천 NCC 3만8천2백73톤 ▲현대석유화학 3만5천3백12톤 ▲대한유화공업 3만4백85톤 ▲LG석유화학 8천5백23톤 ▲호남석유화학 7천5백32톤 순으로 조사됐다.

LPG자동차충전소 저장설비 능력변경은

사업소내 합산 저장능력이 30톤 이하가 돼야

산자부 LPG안전관리 고시 개정 안전도 향상시 종전 안전거리 적용

기존 LPG충전소의 증·개축을 위한 안전성평가기준이 담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가 개정됐다.(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61호, 2002.6.20자)

이번 고시개정안은 지난4월12일자로『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는 LPG충전사업자는 저장설비·가스설비의 위치변경 및 능력변경 시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끔 LPG법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LPG충전사업자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사고의 발생빈도, 사고발생시 피해영향 등 안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안전성평가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또는 능력변경후 안전도가 변경전에 비해 향상되는 경우 규칙 별표3제1호가목 및 나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안전거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되는 안전거리는 용기충전소는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

10톤이하 17m ▲10톤초과 20톤
이하 21m ▲20톤초과 30톤이하
24m ▲30톤초과 40톤이하 27m
▲40톤초과 30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충전소의 경우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1종(2종) 보호시설까지 ▲10톤이하 17m(12m) ▲10톤초과 20톤이하 21m(14m) ▲20톤초과 30톤이하 24m(16m) ▲30톤초과 40톤이하 27m(18m) ▲40톤초과 30m(20m)의 안전거리를 유지도록 했으며 저장설비의 능력변경은 사업소내 합산 저장능력이 30톤이하가 되도록 했다.

안전공사는 영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하는 때에 안전성평가 시 적용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고시는 충전소내에 ▲LPG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m²이하의 식당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m²이하의 창고 ▲그밖에 공사사장이 충전소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LPG용기 생산량 감소

상반기집계…전년동기 16% 줄어

국내 LPG용기생산량이 줄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LPG용기는 모두 24만5천8백6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만3

천4백8개보다 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kg용기는 2만2천5백44개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49%가 줄었으며, 13kg용기도 1만2천2백75개가 생산돼 지난해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50kg는 4만7천6백46개가 생산돼 6.7% 증가했다.